



열린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 2017년 신전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7. 9. 13.(수)~9. 15.(금) / 3일간
- 대상기간 : 2015. 9. 1. ~ 2017. 8. 31. / 2년간
- 지적사항 : 23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7건, 주의 16건
  - 재정상 조치 : 347천 원(부과 345, 기타 2)



강진군  
[기획홍보실]

# 2017년 신전면 종합감사 결과

## I 총 평

### 1. 일반행정 분야

#### 1. 일반행정 분야

- 마을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등을 청취하여 적극 행정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활발한 향우회 교류 및 신전면 전·현직 기관·사회단체장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면정 발전에 크게 기여함.
- 관광객이 찾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힘쓰는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행정을 잘하고 있으나, 선례답습적인 업무 처리와 깊이 있는 업무 연찬부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등에 처리가 미흡함.

#### 2. 외계분야

-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무분별 하게 집행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사례가 있었음.

#### 3. 건설분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함에도, '15년부터 '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4. 사외복지 분야

-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예산지출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크카드등을 사용토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5. 농업분야

- 산불방지 종합대책 계획수립 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불 위험도에 따른 4단계 예보 발령시 행동요령 및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요청하는 계획등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시에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 2회이상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II 감사 결과

### 1. 지적 건 수 : 23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7건, 주의 16건
- 재정상 조치 : 347천 원(부과 345, 기타 2)

###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야	건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23건	7	16	347		347	
1	행정분야	관용 행정차량 관리소홀	○					
2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관리 소홀		○				
3	회계분야	세출예산 지출업무 소홀		○				
4	"	예산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				
5	"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		○				
6	"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345		345	
7	"	예금이자 수입 미불입	○		2		2	
8	"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미 첨부		○				
9	민원분야	인증기 수입정산 관리 소홀		○				
10	공사분야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11	"	불필요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		○				
12	"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13	"	공사 하자검사 소홀	○					
14	"	공사 관리대장 기록관리 소홀	○					
15	"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				
16	"	공사계약 체결 소홀		○				
17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협약서 누락	○					
18	사회복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동의 확인 소홀		○				
19	"	신전경로식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20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 구비서류 장구 부적정		○				
21	농업분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2	"	2017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계획수립 미흡		○				
23	"	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 Ⅲ 지적사항 요약

#### 1. 행정차량 관리 소홀

- 『강진군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규정에 의하면,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전면에서는 2017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해 새올행정 시스템 차량정비 항목에 입력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함.

####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관리 소홀

-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제9조(강사)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사의 출강부에 의해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3. 세출예산 지출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17.2.23.)시행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 6건을 지출하면서 건당 최저 960천 원부터 최고 1,648천 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 4. 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수용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무실 내에 설치된 냉온정수기 임차료를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음.

## 5.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 제1항에 의하면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2월부터 2017년 감사일현재까지 총 18건에 대해 최저 4일부터 최고 47일을 경과하여 수당을 지급함.

## 6.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1,000천 원 이상 물품 구입계약시 계약금액의100분의 1.5%를 적용하고, 공사계약시에는 2.5%를 적용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산출결과 1건 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매입 하여야 함에도 2015년 3건, 2016년 1건등 총 4건에 345천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함.

## 7. 예금이자 수입 미 불입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 3건 1,260원, 2016년에 2건 510원 등 총 1,770원을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음.

## 8.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미 첨부

-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에 따르면 2일 이상 관외출장시에는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에 2건에 대해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지출함.

## 9. 인증기 수입 정산 관리 소홀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계기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에 1건 39,300원, 2016년에 1건 39,300원에 대하여 일일결산 후 7일을 경과하여 지연 납입함.

## 10.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 하여야 함에도, 신전면에서는 2017년 2건 1,295천 원을 부대비로 지역민의 영농현장 위문 격려를 위하여 음료를 구입 하였음.

## 11. 불필요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4조 1항, 시행령 제50조1항1호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면사무소 불탑교체 및 배관보온공사의 3건에 대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음.

## 12.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공사 계약시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수하여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하나, 2017년 계약한 공사 11건에 대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 개정전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 13. 공사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실시하고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등 업무를 소홀히 함.

### 14. 공사 관리대장 기록·관리 소홀

-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거나, 또는 강진군 계약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15. 공사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항,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각종 공사계약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 대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관계로 계약하였던 총29건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함.

### 16. 공사계약 체결업무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에도 공사계약시 일부 서류 등을 누락하는 등 총27건에 대한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함.



**17.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확약서 누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50조,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시 계약 금액(3천만 원 미만)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정하고, 준공 검사를 마친 경우에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18.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강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신청방법)제1항에 의하면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함.

**19. 신전경로식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교부조건)제1항제3호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를 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20.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제1항에 의하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가 되어 있으면 미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에 2건과 2017년 1건등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음.

## 21. 산불방지 업무 소홀

- 매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읍·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순찰, 홍보, 계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실천 계획을 미 수립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보조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지원 사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 2회이상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23. 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3년 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으로 지원 되었던 당시 보조사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실제 관리자를 사망자의 아들로 변경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히 함.